

2019학년도 2학기 주요 사항

①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(2.20%) [국정과제]

-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'19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직전학기과 동일한 2.20%로 저금리 기조 유지
- ※ (국정과제 49)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-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-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

②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

- (개선배경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체 3개월 이하 7%, 3개월 초과 9%로 금융권 대비 높아 인하 필요
- (개선내용)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6%로 인하
- ※ '20-1학기 신규대출부터는 대출금리+가산금리 형태로 개편 예정

③ 특별추천제도 개선

- (개선배경)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·교직원의 불편 해소,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·심사방식 개선 필요
- (개선내용) 성적·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'맞춤형 교육' 이수 시 재단이 심사·승인하는 '특별승인제도'로 개선
- ※ 맞춤형 교육(특별승인 교육): 제도 내용,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 교육

④ 특별승인제도(특별추천제도) 성적기준 완화

- (개선배경) 학기 중 사고·질병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완화 필요
- ※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: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
- (개선내용)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학생이 사고·질병으로 4주(주말·공휴일 포함 28일)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최소 성적기준 미적용

⑤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

- (개선배경) 대출자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고,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
- (개선내용)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하고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개선

⑥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

- (개선배경)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
- (개선내용)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('19학년도 학부 신입생)*의 부모로 확대
- * 단, 기혼자,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

참고

학자금대출 제도 비교(2019학년도 2학기 기준)

구분		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신청대상	대상	·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(대학원, 학점은행제 교육기관, 외국대학 제외)	·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(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)
	연령	· 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	· 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
	성적기준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(또는 12학점 이수)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	· 신입생 : 제한 없음 · 재학생 :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 학점(또는 12학점 이수)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	소득기준	· 소득 8구간 이내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	· 소득구간 제한 없음
	신용요건	· 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	·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
대출금리	· 변동금리(연 2.20%)	· 고정금리(연 2.20%)	
대출조건	· 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없음) ·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· 등록금 : 소요액 전액(한도 있음) ※ 대출금액 총한도 · 대학(전문대학 포함) : 4천만원 · 5, 6년제 대학원 및 일반, 특수대학원 : 6천만원 · 의/치의/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: 9천만원 · 생활비 :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	
대출기간	·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('19년 기준 연소득 2,080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·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	·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	
상환방법	· 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· 자발적 상환: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(재단) (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·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)	